##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98 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 박홍배 • 이기헌 • 이상식

민병덕 · 김현정 · 김남근

강득구・강훈식・한준호

정진욱 • 이수진 • 박정현

서영교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

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, 중복 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(지점, 출장소 등) 감소가 증가하 는 추세에 있음.

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,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,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(非)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라는 우려가 있음.

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 제를 예방하고,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 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 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,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 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,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(안 제29조의2 신설).

##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2(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) ①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영업점 폐쇄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결과
  - 2.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한다.
  - ④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

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범위, 안내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재 정 안  제29조의2(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) ①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한다.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. 1. 영업점 폐쇄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결과 그 및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원 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적
	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

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은행 에 알려야 한다.

④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영업점의 폐쇄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이해관계인의 범위, 안내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.